대통령 윤석열의 검사·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(박은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162 발의연월일: 2024. 7. 23.

발 의 자: 박은정・김준형・조 국

차규근 • 김선민 • 이해민

황운하 · 서왕진 · 정춘생

신장식 · 김승원 · 김재원

강경숙 의원(13인)

제안이유

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재직 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· 수사 방해, 판사사찰문건 전달행위 등 비위 의혹으로 서울행정법원에서 직권남용의 중대비위가 인정된 바 있고, 대장동사건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대장동 개발로 인한 범죄 수익을 교부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재직 시 부친 윤기중연세대 명예교수의 서울 서대문구 연회동 자택을 매입했다는 의혹 등이 있음. 이는 검사 및 검찰총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중대비위 의혹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었음.

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

작 의혹, 명품백 수수 의혹,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, 무자격업체의 관저 증축 의혹, 국방부장관 추천 의혹, 경찰 고위간부 인사개입 의혹,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등 국정농단 수준의 중대한 비위의혹이 있고 윤석열 대통령도 이에 관련되어 있다는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.

위와 같은 중대비위, 국정농단에 해당하는 각종 범죄 의혹에 대하여 수사기관은 오히려 국민적 불신을 지속적으로 증폭시키고 있고, 대다 수의 국민들은 대통령과 그 배우자도 평범한 사람들과 동등하게 그리 고 공정하게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.

현직 대통령은 헌법 제84조에 따르면 형사소추를 할 수 없으나 중 대범죄 의혹에 대한 수사는 가능하고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수사에서 확인된 바 있음.

이에 특별검사 임명을 통해 대통령 윤석열과 배우자 김건희 등에 대한 각종 범죄 의혹을 엄정히 조사하여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히 국민 앞에 규명하고자 함.

주요내용

- 가. 윤석열 대통령의 검사·대통령 재직 시 중대비위 의혹과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과 그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).
- 나.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과 이 사건의

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임(안 제2조).

- 다.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 정당은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추천하고, 대 통령이 이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함(안 제3조).
- 라.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소를 유지하고, 대통령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 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사건을 인계하고,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대통령직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여야 함 (안 제6조).
- 마. 특별검사는 필요한 경우 파견검사 20명,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로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추천하는 6명 중에서 3명의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하고, 특별검사는 40명 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음(안 제6조 및 제7조).
- 마. 특별검사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고,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, 파견된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됨(안 제8조).
- 바.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간 직무수행에 필요한 준비를 할

수 있으며,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나, 대통령과 국회에서면으로 보고하고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, 연장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음(안 제9조).

- 사. 이 법에 따른 수사대상에 관한 압수 또는 수색에 있어서 형사소송 법 제110조, 제111조 및 제1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, 이에 따라 확보된 증거는 이 법에 따른 재판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(안 제10조).
- 아.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수사대상 사건 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피의사실 이외의 수사과정 에 관한 언론 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음(안 제13조).
- 자. 대통령은 이 법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고 특별검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(안 제16조).
- 차.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함(안 제17조).

법률 제 호

대통령 윤석열의 검사·대통령 재직시 중대비위의혹 및 배우자 김건희의 국정농단 의혹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- 제1조(목적)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 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특별검사의 수사대상)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 및 그와 관련된 사건에 한정한다.
 - 1.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채널A 사건 감찰을 방해하고 수사를 방해 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의혹사건
 - 2.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(소위 판사사 찰문건)을 작성·배포하였다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의혹사건
 - 3.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김만 배의 누나가 김만배로부터 범죄 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하였다는 의 혹사건
 - 4.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등이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의 주가를 조작하고 주식을 특혜로 매입하였다는 의혹사건
 - 5.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가 민간인으로부터 명품 가방 기타 재물을

수수하였다는 의혹사건 및 검찰이 위 김건희를 출장조사하는 과정에서 대검찰청에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사건

- 6.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과정에서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및 그 일가가 국토교통부, 경기도 양평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특혜 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사건
- 7. ㈜코바나컨텐츠 전시 관련 공사 업체이자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수의계약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입주할 관저 증축 공사를 시공하였다는 의혹사건
- 8.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등의 국방부장관 추천 의혹, 경찰 고위간 부 인사 개입 의혹,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, 해병대 사령관 계급 격상 시도 의혹사건
- 9.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 제3조(특별검사의 임명) ① 국회의장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.
 - ② 대통령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하기 위한 후보자추천을 대통령 자신이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정당의 교섭단체를 제외한 교섭단체와 교섭단체가 아닌 원내정당 중 의석이 가장 많은 정당에 서면으로 의뢰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특별검사후보자추천의뢰를 받은 교섭단체와 정당

- 은 의뢰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15년 이상 판사 또는 검사의 직에 있었던 변호사 중에서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 면으로 추천하여야 한다.
- ④ 대통령은 제3항에 따른 특별검사후보자추천서를 받은 때에는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추천후보자 중에서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여야 한다.
- 제4조(특별검사의 결격사유)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검사로 임명할 수 없다.
 - 1.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
 - 2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 또는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에 따른 공 무원
 - 3. 특별검사 임명일 전 1년 이내에 제2호의 직에 있었던 자
 - 4.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이거나 가졌던 자
 - 5. 「공직선거법」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(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)로 등록한 사람
- 6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제5조(특별검사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) 특별검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며,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.
- 제6조(특별검사의 직무범위와 권한 등) ①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및 공

소유지. 다만 대통령에 대하여 공소제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간 만료일로부터 3일 이내에 관할 지방검찰청 검 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공소제기가 필요한 이유를 설시하여 사건을 수사기록 및 증거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.

- 2. 제7조에 따라 임명된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과 관계기관으로 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·감독
- ② 특별검사는 직무의 범위를 이탈하여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 되지 아니하는 자를 소환·조사할 수 없다.
-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, 대검찰청,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사건의 공판기록, 수사기록 및 증거 등 관련 자 료의 제출과 수사 활동의 지원 등 수사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-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고위공 직자범죄수사처, 대검찰청,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 무원의 파견근무와 이에 관련되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. 다만, 파 견검사의 수는 20명,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의 수는 40명 이 내로 한다.
- ⑤ 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이관을 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대통령직 퇴직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.

- ⑥ 제3항 및 제4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. 관계 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할 경우 특별검사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게 관계 기관의 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개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⑦ 「형사소송법」, 「검찰청법」과 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권한에 관한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의 경우 에 준용한다.
- 제7조(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) ① 특별검사는 7년 이상 「법원조직법」 제42조제1항제1호의 직에 있던 변호사 중에서 6명의 특별검사보후보자를 선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로 임명할 것을 요청할수 있다. 이 경우 대통령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그 후보자 중에서 3명을 특별검사보로 임명하여야 한다.
 - ② 특별검사보는 특별검사의 지휘·감독에 따라 제2조 각 호의 사건과 관련된 수사 및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특별수사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공무원에 대한 지휘·감독을 한다.
 - ③ 특별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40명이내의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.
 - ④ 특별수사관은 제2조 각 호의 사건수사의 범위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.
 - ⑤ 특별검사보와 특별수사관의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제4조를, 특별

검사보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6조제7항을 각각 준용한다.

- ⑥ 특별검사는 수사완료 후 공소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특별검사보, 특별수사관 등 특별검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인원을 최소한의 범위 로 유지하여야 한다.
- 제8조(특별검사등의 의무) ① 특별검사, 특별검사보 및 특별수사관(이하 "특별검사등"이라 한다)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과 퇴직 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② 특별검사등과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및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제9조제3항·제4항,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되어 직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하여서는 아니 된다.
 - ④ 특별검사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.
 - ⑤ 「형사소송법」, 「검찰청법」그 밖의 법령 중 검사의 의무에 관한 규정은 이 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에 준용한다.
- 제9조(수사기간 등) ① 특별검사는 임명된 날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, 특별검사보의 임명요청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

준비를 할 수 있다.

- ② 특별검사는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70일 이내에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한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- ③ 특별검사는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고,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④ 특별검사는 제3항의 수사기간 연장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고,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하여 수사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.
-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승인요청은 수사기간 만료 3일 전까지 행하여져야 하고, 대통령은 수사기간 만료 전일까지 승인 여 부를 특별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⑥ 특별검사는 수사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사기간 만료일부터 3일 이내에 사건을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대한 보고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하되, 그 보고기간의 기산일은 사건인계일로 한다.

- ⑦ 제6항에 따라 사건을 인계받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신속하게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 를 결정하고 공소제기된 사건의 공소유지를 담당한다.
- ⑧ 제7항의 경우 사건의 처리보고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.
- 제10조(압수 또는 수색에 관한 특례) ① 이 법에 따른 수사대상에 관한 압수 또는 수색에 있어서 「형사소송법」 제110조, 제111조 및 제11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- 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증거는 이 법에 따른 재판에 한하여 증거로할 수 있다.
- 제11조(재판기간 등) ① 특별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,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공소제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,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선고일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.
 - ② 제1항의 경우 「형사소송법」 제361조, 제361조의3제1항·제3항,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·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.
- 제12조(사건의 처리보고) 특별검사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하였을 경우 및 해당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각각 10일 이내에 이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3조(사건의 대국민보고)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의 명을 받은 특별검사보는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대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

여 피의사실 외의 수사과정에 관한 언론브리핑을 실시할 수 있다. 제14조(보수 등) ① 특별검사의 보수와 대우는 고등검사장의 예에 준한다.

- ② 특별검사보의 보수와 대우는 검사장의 예에 준한다.
- ③ 특별수사관의 보수와 대우는 3급부터 5급까지 상당의 별정직 국가공무원의 예에 준한다.
- ④ 정부는 예비비에서 특별검사의 퇴직 시까지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.
- ⑤ 특별검사는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무실과 통신시설 등 장비의 제공을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.
- 제15조(퇴직 등) ① 특별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퇴직할 수 없으며,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.
 -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가 사망하거나 제1항에 따라 사퇴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여야 하고,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후임 특별검사는 전임 특별검사의 직무를 승계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경우 제9조의 수사기간 산정에 있어서는 전임·후임 특별검사의 수사기간을 합산하되, 특별 검사가 사퇴서를 제출한 날부터 후임 특별검사가 임명되는 날까지

- 의 기간은 수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- ④ 특별검사등은 제12조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판결이 확정되어 보고서를 제출한 때에 당연히 퇴직한다.
- 제16조(해임 등) ① 대통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검사 또는 특별검사보를 해임할 수 없다. 특별검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 - 1. 제4조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견된 경우
 - 2. 특별검사가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또는 제7조제6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에게 특별검사보의 해임을 요청하는 경우
 - 3. 제8조제1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한 경우
 - ② 대통령은 특별검사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국회에 통보하고 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명절차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를 임명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직무승계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 후단을, 수사기간의 산정에 관하여는 같은 조 제3항을 각각 준용한다.
 - ③ 대통령은 특별검사보가 사망하거나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7조제1항에 따라 후임 특별검사보를 임명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제2호(제7조제6항에 따른 경우로 한정한다)에 따라 특별검사보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- ④ 특별검사는 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특별수사관을 해임하거나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소속 기관의 장에게 교체를 요청

할 수 있다.

- 제17조(신분보장) 특별검사와 특별검사보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.
- 제18조(회계보고 등) 특별검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경우와 공소를 제기한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, 보관하고 있는 업무 관련 서류 등을 검찰총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 다만, 공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공소제기일까지의 비용지출 및 활동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중간보고하여야 한다.
- 제19조(재판관할) 제2조 각 호의 사건에 관한 제1심 재판은 서울중앙 지방법위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한다.
- 제20조(이의신청) ① 제2조 각 호의 사건의 수사대상이 된 자 또는 그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, 동거인, 변호인은 제6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등 특별검사의 직무범위 이탈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 -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, 특별검사를 경유하여야 한다.
 - ③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처리한다.
 - 1.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내용에 따라 즉시

시정하고, 이를 서울고등법원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
- 2.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신청서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.
- 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접수한 서울고등법원은 접수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. 이 경우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수사기록의 열람 등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.
- 1.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을 기각한다.
- 2.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한 때에는 신청대상 조사내용이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를 이탈하였음을 인용한다.
- ⑤ 제4항제2호에 따른 인용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검사는 해당 결정의 취지에 반하는 수사 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⑥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없다.
- ⑦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도 불구하고 특별검사의 수사활동은 정 지되지 아니한다.
- ⑧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인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또는 그와 별도로 이유를 소명한 서면으로 서울고등법원에 해당 처분 등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, 법원은 지체 없이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.

- ⑨ 서울고등법원이 제4항 또는 제8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이의신청인과 특별검사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21조(벌칙)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특별검사 등의 직무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
- 제22조(벌칙) ①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, 5년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② 특별검사등이나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 또는 특별검사의 직무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가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사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,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 - ③ 제6조제4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이 제8조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수행 중 지득한 정보를 소속 기관에 보고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,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- 제23조(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) 특별검사등 및 특별검사의 직무 보조를 위하여 채용된 자는 「형법」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 칙의 적용에서는 공무원으로 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유효기간) 이 법은 제15조제4항에 따라 특별검사가 퇴직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 다만, 제9조제8항에 따라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장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.

제3조(실효의 효과에 대한 특례) 이 법의 실효는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벌칙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.